

2019년도 『로봇융합Business지원사업』 지원대상 기업 모집

로봇기술과 他 산업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로봇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해 기존사업과 로봇의 결합으로 Business를 창출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2019년 06월 05일
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

1. 사업개요

사업목적

- 로봇기술과 他 산업과 융합된 우수한 로봇 융합 비즈니스모델 (아이디어, 제품, 서비스) 발굴 및 육성·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로봇융합산업의 성장 롤 모델 실현 및 확산

※ 로봇융합비즈니스모델이란?

농업, 정보통신, 생활가전, 철강 등 기존 산업에 로봇기술 혹은 공장 자동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을 말함

- 지원규모(2019년도) : 3개사, 총 150백만원(기업당 최대 50백만원)

* 지원금액·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

- 민간부담금 : 지원금액의 25%이상 부담(현금 또는 현물)

- 지원기간 : 2019년 6월(협약체결일) ~ 2019년 11월 30일

<융합비즈니스모델 창출 사례>

<p>로봇제어 기술 + 트랙터(농업)</p>	<p>자율주행 기술 + CCTV (정보통신)</p>	<p>자율주행기술 + 청소기(생활가전)</p>	<p>로봇제어기술 + 영상(생활가전)</p>
			
<p>바로텍시너지 (트랙터 안전교육시뮬레이터)</p>	<p>바람시스템 (홈서비스로봇)</p>	<p>드림씨앤지 (노먼청소 서비스)</p>	<p>에이티디랩 (승마체험서비스)</p>
<p>246백만원 매출</p>	<p>유럽 CE, 미국 FCC, 중국 SFCC 등 5.7억원 매출</p>	<p>보급사업 연계 및 싱가포르 수출</p>	<p>승마체험관 사업 진출</p>
<p>교육용 로봇 키트 + 경진대회</p>	<p>원격제어 기술 + 인쇄기술</p>	<p>로봇제어기술 + 트랙터(농기계)</p>	<p>로봇제어기술 + VR(가상현실)</p>
			
<p>새온 (교육용 로봇 경진대회)</p>	<p>로보프린트 (벽화로봇)</p>	<p>동양물산&언맨드솔루션 (무인트랙터)</p>	<p>(주)상화 (로봇VR시뮬레이터)</p>
<p>로봇키트 및 경진대회 말레이시아 등 수출</p>	<p>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, 건설 신기술 인증</p>	<p>무인농기계 렌탈 서비스 추진</p>	<p>VR 테마 파크 신시장 창출</p>

□ 지원대상

○ (필수) 경상북도 소재 기업

* 단, 협약체결일 전에 경북으로 사업장 이전 예정인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

○ 핵심 파트너로 울산 소재 기업과의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업

* 울산 소재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울 경우 컨소시엄 구성에 필요한 他 산업, 기술 등 컨소시엄 구성 추천 희망 분야를 지정하면 기업 선정 이후 별도 울산 기업 추천 예정

○ 로봇기술과 他산업과 융합한 BM모델 보유 혹은 신규 사업 아이템이 있는 기업(예비 창업자 가능)

* 단,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종료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2. 사업 내용

□ 기본방향

- 로봇산업 시장 진출·선점 및 新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 BM(他산업과 로봇기술이 융합) 발굴을 통해 특화된 로봇기업 육성

□ 지원내용

- 로봇융합비즈니스 모델의 핵심파트너 발굴, BM분석·개발, 핵심자원(기술·지적재산권 등) 및 유통채널 확보, BM검증 등 지원

* 他산업 분야 기업의 로봇기술을 활용한 신규 로봇 개발 및 既개발된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 개발

※ (예시) 로봇융합비즈니스 모델 지원 프로그램 내용

유형	내용(목적)	프로그램
(필수) BM컨설팅	성공BM창출	핵심파트너 발굴, BM분석·개발(상품기획), 핵심자원(기술·지적재산권) 확보
(필요시) 맞춤형 지원	기술지원	베타테스트 플랫폼 개발(시제품제작), 기술지도, 특허지원 등
	사업화 지원	R&D 및 경영전략, 제품고급화, 디자인·브랜드 개선 등 각종 컨설팅 및 네트워킹, 마케팅 등 유통채널 확보

※ BM컨설팅은 필수적으로 지원되는 항목이며, 진단 결과 및 기업성장방향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

3.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

□ 평가절차

- 평가방향 : 기업역량, 성장가능성, 사업목표의 명확성·적정성, 사업추진 전략의 구체성·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 선정

○ 선정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선정기준

○ 평가지표

평가항목		세부 평가항목	배점
I.	비즈니스모델(BM) 실현가능성 (30)	비즈니스모델(BM)의 구체성	15
		비즈니스모델(BM)기반 사업 타당성 - 기술성, 시장성, 성장가능성 분석 기반	15
II.	사업계획의 구체성 (40)	사업목표의 구체성	10
		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	10
		사업화 실현 가능성(기대효과 중심)	10
		他 산업 기술과 융합성	10
III.	성공가능성 및 기업 역량 (30)	아이템의 성장가능성	10
		아이템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	10
		기업의 기술수준	10
IV.	가산점	울산 기업 컨소시엄 구성	5
총점수			100(+5)

□ 지원대상 선정

○ 서류평가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, 지원기업으로 선정

- * 지원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, 과제 사업비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을 확정
- * 평가 및 선정결과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 계획서에 기입된 이메일로 통보

5.접수 및 방법

접수마감: 2019. 06. 21.(금) 17:00까지

신청방법

○ 신청서 양식: 첨부파일 참조

○ 접수방법

- 온라인 제출 : jyh82@kiro.re.kr

- 제출서류 :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

②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

③ 사업자등록증 사본

(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)

④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(표지 포함)

※모든 파일은 스캔한 PDF파일 및 원본 HWP 파일 첨부 必, 직인이 필요한 부분은 직인 후 스캔

6. 일정 및 사업문의

평가·선정 및 협약 체결

○ 평가·선정 : 2019. 6월말

○ 협약 체결 : 2019. 6월말

사업문의

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기업지원실	주영환 선임	054-279-0423 010-5017-8750 jyh82@kiro.re.kr

7. 지원제의 대상

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
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선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(지원) 가능

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
- 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(지원) 가능

☞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(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1))

☞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경우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
- *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, 5천만원을 자본금의 기준으로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상태 확인(단, 별도의 자본금 확충 계획 및 투자유치 계획 제출 시)

☞ 기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

8. 유의사항
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
- 최종사업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지원금(시제품 제작비, 시험·분석비 등)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업이 추가 부담하도록 함

1) 1. 금융 및 보험업, 2. 부동산업, 3.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), 4. 무도장운영업, 5.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, 6.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, 7. 기타 개인 서비스업(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, 8.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□ 기업지원금 중, 부가세가 발생하는 사안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
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금으로 사용가능

*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, 부가세는 선정기업 부담 원칙